

국방부의 '시국관련 수형자 병역처리 기준마련 발표'에 대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의 입장

지난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관련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해 정부가 88년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형선고자 전원에 대해 징, 소집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가 2월 16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병역처리 기준을 확정 발표한 바, 그 내용이 지난해 10월 8일 수형기간 합산 2년 이상자에 한하여 징, 소집을 면제한다는 병무청의 발표보다는 진전된 것이나, 국회 결의와 사회 각계 각종의 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 해 6공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에 대하여 90%의 사실상 수배 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국회가 결의한 바에 따르더라도 청원자의 83%를 구제하자는 것인데 정작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불과 30%에 지나지 않아 수긍하기 어렵다.

기왕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에게 정상적 사회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1년 6월과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실형 23개월을 복역한 안용현 씨의 경우는 국방부의 발표에 따를 경우 18개월 동안 복무를 해야하며, 만25-26세로서 이미 졸업한 사람들 또한 18개월동안 군복무를 해야한다. 이경우에 이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방부의 방침은 잘못된 과거를 온전히 청산하고 시국관련 수형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와 일면 모순된다고 본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국방부가 국회의 결의와 사회 각계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여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때 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4. 2. 16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784--4665-6)

의 건 서

청원인들은 '89. 3. 25부터 '93. 2. 24사이 잡시법위반등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들로서 현행 병역법시행령 제103조와 병무청의 수형자 처리기준을 '89. 3. 25 개정이전인 '88. 8. 1부터 '89. 3. 24까지 시행된 내용과 같이 다시 환원개정하여 이를 시국관련 수형자들을 보충역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인 바, 지난 시기의 민주화를 위한 시국관련활동으로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형선고자는 아니나 이들은 그동안 수배·구속·수형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회생에 대한 치료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이 청원의 취지를 공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성직자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기독교

강원봉, 김관석, 김성수, 장희동, 김정현, 나위봉, 변선환, 김재열, 김상근, 김영규, 윤두호, 김동완, 박완, 강만원, 백남운, 김진준, 서정덕, 서달수, 이현덕

☞ 21세기 기독교운동본부 소속 목사님들

조향록, 김상복, 김준근, 이만신, 홍정길, 박종순, 김자연, 육한홍, 이정익, 박영률

전체합계 1,400여분

불교

장기성, 식주, 송월주, 수산, 양재수, 월운, 월주, 월탄, 이청화, 재홍, 조오현, 지선, 진관, 청화, 한상범, 현가 혜총, 화산스님 등

전체합계 330분

천주교

강우일, 최용록, 심종혁, 곽상민, 김성태, 도요안, 함세웅, 김백암, 남국현, 최종건, 허중식, 한만옥, 황홍복, 김무현, 송재남, 남학현, 차원석, 조형관, 이병문 등

전체합계 163분

천도교 박노진, 신덕순, 유봉선, 방진규, 양건주, 김현국

천불교 김대선(천불교 서울사무소 교무)등

전체합계 126분

여성계 서명자

김숙임, 김윤옥, 나선흥, 박순경, 서은경, 심정희, 손봉숙, 유흠모, 이계경, 이미경, 이영순, 이태영, 이효재, 이희호, 양귀자, 조화순, 한명숙 등

전체합계 81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 지난관계로 보는 분들의 명단을 신지 못하였습니다.

▶ 지역관계로 서명해주신 분들의 직책과 소속을 밝히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광고**양심수 정집문제 해결을 위한****북한술 판매**

봉한술 세트, 인자술, 오각포승, 뼈로술, 삼지구역초술, 들쭉술, 인풀술,
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은 전화만 주시면 즉시 배달해드립니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 784-4665, 782-8928, 9)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기독교계 서명현황

청년학생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기독성직자 서명자 명단

-총 1,517인(가나다순)-

강만원 목사(세계복음화협의회 공동의장/성동교회 당회장)

강원룡 목사(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원로목사)

금영균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관석 목사(새누리신문 사장/원로목사)

김동완 목사(KNCC 인권위원회 위원)

김상근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원장)

김성수 주교(대한성공회 관구장)

김성활 (구세군대한본영 서기장)

김재열 신부(KNCC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공룡교회 당회장)

김지길 목사(아현감리교회 원로목사)

김진준 목사(감리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모임 대표)

나원룡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전 서울연회감독/현 선교위원장)

박 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총회장 권한대행)

박기백 목사(KNCC 선교국장)

박순경 목사(전 목원대신학과 교수)

박순금 목사(전 교회여성연합회장)

백남운 목사(전국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 의장)

변선환 목사(전 감리교신학대학 학장)

서달수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장/신천중앙교회 당회장)

서정덕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장/광염교회 당회장)

윤두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목회자협의회 총무)

이현덕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총무)

장희동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5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보고

지난 1993년은 우리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단든 한해였습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문민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단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많은 개혁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방화 국제화라는 미명아래 계속 박차를 가해야할 사회개혁의 속도가 멀어지고 1994년 들어서는 청산 되어져야 할 과거 잔재들을 유지시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개혁의 계속적인 추진은 개방화,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독교 성직자 1517명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계속적인 개혁을 실시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 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1993년 3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민정부가 탄생되게 된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괴와 땀의 댓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과거 5·6동화국 암울했던 군사통치에 맞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다 수배-구속-수형생활 등으로 인하여 4-5년간 사회와 격리되었다가 또다시 군 입대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500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3년 2월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서를 국회 제출하였고 이안이 지난 1993년 12월 17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이들에 대한 정집면제를 국방부와 정부측에 권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독 성직자들은 국민의 뜻이 확인된 이상 이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그리스도의 뜻이라 믿고 지난 1월 10일부터 거명작업을 시작하여 현재 각 교단과 단체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존경받는 1517명의 기독성직자들께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1517명의 뜻과 의지를 모아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고 정부와 국방부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밝히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범 기독교계

성명서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번호	도록
	B19	#2 55

사건개요와 의미

최이병은 1988년 3월2일 군산대학교 제어계측 공학과에 입학하여 89년도 공과대 학생회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준비위원장', '공학관 조기설립 및 실험실습 기자재 쟁취를 위한 투쟁위원장', '농촌 봉사활동위원장' 등의 활동을 통해 조국통일과 학원민주화를 위해 활동하였다. 90년도에는 전교조 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을 했고, 군산동양화학 TDI 독가스 철거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전교조 후원회일로 지역수배를 받았다.

지역수배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90년 9월27일 휴학계를 제출하여 한달 열흘만에 신검을 받고 신검후 두달 열하루만에 논산훈련소 조기입대를 하게 된다.

논산훈련소에서 퇴소후 자대배치를 받기 전에 이를동안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학생운동당시 활동 내용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것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 강요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녹화사업 전문부대인 독립중대 6개로 구성된 5163부대로 자대배치 받았다. 3월16일 독립중대 805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다음날부터 모든 훈련과 일과에서 열외시키고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며 하루에 7~8차례씩 집단구타를 당했고 밤에는 매일 "공산주의의 혀와 실", "학생운동의 전모", "어느 사상법의 고백", "수인번호 3179", "프로레타리아독재, 과연 민주주의인가" 등 반공서적을 주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했으며 군화를 혓바닥으로 활아서 닦고, 손톱, 발톱 깎은 것을 강제로 먹느등 짐승과 같은 생활 속에서 구타로 이빨과 코뼈가 부러지고, 국군통합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다. 4월3일에는 심한 구타로 하루에 3번 씩이나 혼절을 했으며 더 이상의 구타를 견딜 수 없어 4월6일 탈영을 했으나 1시간만에 붙잡혀 또다시 심한 구타를 당했다. 4월7일에 누나의 결혼식 때문에 4인의 휴가를 받아 4월10일에 부대복귀를 하였다. 중대본부에서 복귀신고를 끝내자 수리부속창고에 감금시켜 놓고 '편히 쉬었다 왔으니 편한 만큼 댓가를 치워야한다', '너같은 놈은 구타의 혼적도 없이 죽일수 있다'며 4월11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해서 집단구타를 했고, 구토와 혼절을 거듭하였다. (이때 부대내에서는 집마다 최이병이 부대를 복귀하지 않고 탈영했다고 연락한 상태였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휴가는 최이병을 죽이고 의문사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은 아닌지 의혹이 간다) 4월12일 새벽4시, 드라이버로 창문을 뜯고 탈영, 중대 뒷산에 숨어 있다가 7시 45분에 서울행 막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집으로 가려다가 많은 애국청년학생들의 고통에 찬 얼굴이 떠올라 이러한 처참한 진상을 밝히기위해 양심선언을 결정하였다.

이상 최이병이 양심선언을 하기 까지의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공화국 전두환 시절에 시작된 녹화사업이 6공화국에 이르러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또한 악랄하게 발달해 왔다는 사실이다. 작년10월,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의 불법적 대국민 사찰, 지난 2월 의문사한 남현진 열사에 대한 보안사 정치공작, 기무사의 서강대생 사찰 사건,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합법을 빙자한 6공식 강제징집(부당징집)의 실태와 최이병의 양심선언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6공화국 녹화사업의 조직성과 치밀함, 비인간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국군 기무사령부(보안사)는 날로 성장하여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층 민중세력과 민족민주세력을 탄압하고자 광범위하고 치밀한 대국민사찰 속에서, 학생회등 공개 기구 활동가와 지위전력자들중 휴학이나 출입 예정자, 2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시국관련 출소자, 병역특례 노동자중 노동운동과 관련 해고자 등,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중 입대예정자를 분리, 구체적으로 신상파악을 한 후 합법을 빙자한 6공식 강제징집(부당징집)을 통해 조지 입대를 시키고 있다. 강제징집철폐를 위한 공대위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시국관련 출소자 중 강제징집 대상자는 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기 입대한 청년학생들은 신병훈련후 자대배치를 받기전에 보안사에서의 기초 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끄락치 강요를 받게되고 이를 받아들이면 보안사 정보처 근무를 하게하고(보직번호가 08로 시작됨), 이를 거부할 경우엔 최이병의 경우처럼 녹화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위해 조직된 독립중대 배치를 받아 보복적이고 인간파괴적인 구타와 반공이데올로기 주

입을 통해 인간을 파괴해 나가는 것이다. 고 남현진 열사의 경우 보안사에서의 조사후 심적 갈등 속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고, 최이병의 경우도 부대내 수리부속 창고에 감금시켜 놓고 구타하면서 집에는 "부대복귀하지 않고 탈영했다"고 허위연락을 하여 또 하나의 의문사를 조작하려했음을 알 수 있다.

녹화사업의 대상자들은 프락치공작 속에서 이렇게 의문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혁노맹의 중앙군사위원회처럼 군대내 조직 사건으로 묶여 구속되고 있으며 항상 기무사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시 되는 것은 녹화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 독립중대이다. 최이병의 양심선언문 속에 나오듯이 일반중대 규모인 120명의 절반가량인 60여명으로 독립중대를 구성하고 이 부대원들은 대부분 통일교 신자나 입대전 자유총연맹등 극우집단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독립중대에는 8명의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기무사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부대위치도 위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부대에 배치된 녹화사업 대상자는 최이병의 경우처럼 잔혹한 구타나 비인간적인 생활, 강제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과정 속에서 완전히 파멸 당하게 되고 실제 최이병이 중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좌익사범"이란 문서에는 37명의 전입자 명단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사고사', '전투력 손실'(정신분열증)등으로 병장을 달지 못하고 제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9	37

11월 20일

2019. 11월 20일

I.記事

2019. 11월 20일

2019. 11월 20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회원 차태근씨(28, 고려대 중문과 대학원 1학기 재학)는 며칠전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난데없는 연락을 받았다.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므로 지난달 6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한 제2국민역(징집면제)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올해 2월, 1년간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하며 긴 시간동안 자리하게 끌어오던 자신을 포함한 양심수들의 병역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그 어렵다는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였고 결국 합격하여 지난 9월 입학할 수 있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진로를 결정한 자신이 입대를 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달 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은 제136조에서 제2국민역의 요건을 2년이상 실형자(합산포함)와 “1년 이상 선고자 중 2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 4년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못을 박고 있으며 이는 2월과 4월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되었던 국방부와 병무청의 공문에서 밝힌 “27세 이상 1년 이상 형선고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될 것”이라는 규정에 입법과정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적으로 학력조건이 부과된 것이다. 결국 당연히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30명(추산)에 이르는 양군모 회원들은 과거 혹은 현재 대학원에 등록한 사실 하나만으로 아까운 짧은 시간을 허비한 끝에 다시 입대하여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양군모의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정신에 따라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상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기피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이 조항을 삭제해주는 구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과거에 입학한 대학원(일부는 합법적인 군연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경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기피경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군모는 “이러한 병무청의 처사는 청원처리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월권적인 처사”로 규정짓고 해당자를 비롯하여 모든 회원이 이 문제 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11월 4일에는 병무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자신들의 행정처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고 하면서도 “이미 시행령이 확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에 의하여 늦게나마 정상적 사회참여의 길로 가려는 지난시기 양심수들에게 사소한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는 유치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II. 양군모의 입장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가로막고 있는 병무청의 월권적인 법령해석을 반박한다.

1.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병역문제 해결활동의 개요와 현재의 문제

문민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지난 5-6공시절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의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분투하다 억울한 수형생활을 강요당하여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한 수백명에 이르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 마련을 위해 지난 1993년 3월 이후 1년여에 걸쳐 활동하였던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약칭 양군모)]에 쏠렸던 각계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2월 15일 국방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양군모의 청원이 받아들여짐으로써 300여명에 달하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에게 모처럼 문민사회에의 동참의 기회가 열려졌던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날 이후 양군모에 포함된 많은 젊은이들은 남다른 기대감과 긍지를 안고 사회의 곳곳에서 본격적인 사회참여를 준비해왔으며 혹은 이미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양심수들의 병역문제 처리에 대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이 문제의 주무부서인 병무청의 실무자들에 의해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애초의 법개정 취지를 뒤엎는 상식밖의 법령해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또다시 상당수의 청년 양심수들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양군모의 대표들과 병무청의 징집과 담당자들간에 이루어진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병무청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에 형을 선고받은 시국관련 2년 미만의 수형자들의 병역면제, 혹은 보충역 편입처리에 관련하여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에 의거하여 이 기간중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제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양군모는 이같은 병무청의 법령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상당수의 청년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참여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우선 이같은 병무청측의 법령해석이 과연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재가된 바 있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병역문제에 대한 지난 2월의 청원처리의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는가하는 문제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2. 지난 2월 국방부에 의해 발표된 청원처리의 결과와 지난 10월 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병무청 측의 해석의 모순점

① 병무청의 법령해석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병무청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에 형을 선고받은 시국관련 2년미만 수형자들의 병역면제 혹은 보충역 편입처리와 관련하여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에 의거하여 이 기간 중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재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시행령 참조.-자료1)

병무청 측이 제시하는 관련법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2조에는 “..... 대학의 4년 이하의 과정(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본과 2년 이하의 과정)에 재학하거나 이를 수료 또는 졸업한 사람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무청 측은 이 내용을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거나 졸업한 자는 제2국민역 처분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② 병무청의 법령해석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가) 지난 2월 국방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김대통령이 재가한 청원처리 결과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지난 1994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에 의해 국회의장에게 보고되었던 ‘시국관련 수형자 병역처리 계획’에 따르면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료2)

▶ 처리기준

*형기합산 2년 이상자 *1년이상 형선고자로서 27세 이후 대학 졸업자	제2국민역
*1년 이상 형선고자로서 26세 이전 대학졸업자 *1년 미만 형선고자	보충역

▶ 대상인원 판단

확정인원(207명)	예상인원(200명)
*제2국민역 : 120	*제2국민역 -1년지연시 : 57
*보충역 : 87	-2년지연시 : 83 -3년지연시 : 60

이상의 내용은 현재 병무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령해석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취했던 애초의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국방부는 ‘대학졸업자’라는 기준을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사회복귀 기회의 마련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근거해 받아들여 ‘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제 2국민역 120명, 보충역 87명이라는 확정인원

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하급기관인 병무청에서는 지금 월권적인 법령해석기준을 동원함으로써 대통령이 재가한 애초의 결정을 사실상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나)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처리기준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중 마지막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유] 가운데 <타>항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2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의 4년 이하의 과정에 재학하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등에 대해 제 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 속에 "병역의무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이어지는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범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 기간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병역기피를 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제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자료1) 이러한 조치는 양심수들의 병역문제가 갖는 정치적, 인도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지난 93년 하반기에 있었던 양심수들에 대한 사실상의 수배해제조치와 같은 맥락에 있는 당연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무청이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원진학이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5·6공화국 시절의 양심수들 가운데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려한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자가당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5·6공화국 시절의 양심수들 가운데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병역면탈을 위한 방편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혐의 자체부터가 근거없는 것입니다. 또 설령 일부의 사람들이 입영연기를 위해 그러한 선택을 했던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현행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의적 병역기피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병무청의 월권적인 법령해석에 의해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병역면탈을 위한 악의적 대학원 진학 사례의 근절'이라는 병무청의 애초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법을 어기려면 확실히 어기는 것이 낫다'는 식의 엉뚱한 사회풍조를 정부 스스로가 조장하는 결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다)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학문의 길로 들어선 많은 젊은이들을 다시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고려대학교 85학번 차태근씨(23개월 복역, 28세)는 지난 4월경 병역재처분을 위해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정부의 공문을 받아들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93년초부터 무려 1년여동안 지리하게 끌어지던 자신을 포함한 양심수들의 병역문제가 마침내 열매를 거두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이제야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반년가량의 고군분투를 통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지난 9월 가을학기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며칠전 그는 병무청이 제시한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받고는 충격과 울분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10월 6일 시행령 개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처

분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정부의 발표를 믿고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갖은 노력 끝에 지난 9월에 대학원에 진학한 자신부터가 다시 군에 입대해야만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차태근씨의 이러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십명에 이르는 양군모의 대상자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병무청의 월권적 법령해석이 현실화된다면 이들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서도 다시금 어두운 소외의 그늘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3. 우리의 요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병무청이 제시하고 있는 병역처분 방침은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했던 애초의 청원처리결과를 그 취지와 무관하게 월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나온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병무청의 잘못된 법령해석과 그로부터 파생된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병역처분 불가”라는 월권적 방침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부당한 방침이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해당자는 물론이려니와 전체 양군모 회원들, 그리고 각계의 뜻있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금 모든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려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4년 10월 31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III.< 자료1>

-시행령 개정안 중 관련 조항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등의 제2국민역 편입)

①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 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

2.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중 2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의 4년이하의 과정(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본과 2년이하의 과정을 말한다)에 재학하거나 이를 수료 또는 졸업한 사람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런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7/27

(後 略)

▲ 시행령 부칙 제8조(수형자의 제2국민역처분의 특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타점

수형자의 입영에 따른 군 사고를 예방하고 지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2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과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중 27세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의 4년이하의 과정에 재학하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등(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하고,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량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령 136조 및 부칙 제8조)

〈첨부자료 2〉

국방부

우 140-023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 전화 748-5110 / 전송 796-0369

문서번호 인력 33070- 73

시행일자 1994. 2. 15

수신 : 국회의장

선결	의장		지시	
접	일자간	94. 2. 16 ~ 16. 10	결재·공람	총장
수	번호	369		차장
	처리과	의안과		국장
	담당자			과장

제목 : 청원 처리결과 보고

- 관련근거 : 의안 제5996호 ('93.12.27) 국회채택 청원이송
 - 위 호에 의거 국회에서 채택되어 정부로 이송된 바 있는 시국관련 수령자의 병역면제를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 청원내용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 : 1. 국회청원에 대한 처리의견

2. 시국관련 수형자의 처리계획. 끝.

대

통

七

시국관련 수형자 병역처리계획

국 방 부

국회청원에 대한 처리의견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 제 103조를 개정하여 '89.3.25~'93.2.24 사이에 형을 선고받은 시국관련 2년 미만 수형자의 징·소집면제 청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조치」를 요구한 국회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거 청원인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되나 이를 일괄적인 병역면제 요구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민개병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무행정의 일관성 및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기간·특정집단만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존중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도록 하였습니다.

청원에 대한 처리내용은 수형기간과 취업을 위한 사회복귀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기합산 2년 이상 수형자와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후 대학졸업자는 징·소집을 면제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18개월 복무토록 함으로써 청원인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므로 청원인들도 이를 수용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신한국 창조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국관련 수형자 병역처리 검토

▲ 개 요

○ 청원내용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를 개정하여 '89.3.25~'93.2.24 사이에 형을 선고받은 시국관련 2년미만 수형자에 대하여 징·소집 면제 요구

○ 국방부 검토

- 현역, 보충역의 징·소집면제 제도는 폐지
- 특정기간, 특정집단의 청원해결을 위한 시행령 개정 불가

국회 청원의결을 존중하여
법령범위내에서 긍정적인 해결방안 강구

▲ 추진경위

- 국회채택 청원심의 결과서 접수 : '93. 12. 30
- 정책실무회의 / 정책회의 : '94. 1. 17 / 1.18
- 정책회의 결과 장관보고 : '94. 1. 27
- 당·정 협의 : '94. 1. 28~29
-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 : '94. 1. 30
- 국회, 총리실, 청와대 보고 : '94. 2. 4

▲ 기본방침

- 합법적 · 공개적인 처리가능 방안
-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한 방안
-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

▲ 처리기준

• 형기합산 2년 이상자 •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후 대학졸업자	제 2국민역
•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6세 이전 대학졸업자 • 1년 미만 형 선고자	보충역

▲ 대상인원 판단

확정인원 (207명)	예상인원 (200명)
• 제 2국민역 : 120 • 보충역 : 87	• 제 2국민역 - 1년 지연시 : 57 - 2년 " : 83 - 3년이상 " : 60

※ 2년 이하 지연시 제 2국민역 편입 대상인원
 $120 + 57 + 83 = 260$ 명 (64%)

▲ 기타조치

- 대학제적자종 복학한 자는 29세 까지 졸업가능한 자에 한하여 입영연기 조치
- 기입영 복무중인 자는 본인의 원에 의거 상기 기준을 적용 처리

등록일	수정일	삭제일
2019	14	

28

수신: 인권운동 사랑방

발신: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위원회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국회청원 완전수용

촉구대회” 열려--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는 1월 28일 오후2시 병무청앞에서 200여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국회청원 완전수용 촉구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촉구대회에서는 박찬우(충북대 88) 회원의 사회와 송병구 목사님(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의 격려사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어진 오인근 회원의 어머니 그리고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의 지지연설에서는 양심수들의 부당징집문제는 양심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적 문제라 지적하면서 문민정부는 조속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이젠 양심수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인식(서울대 88) 회원, 김정훈(서울대 87) 양군모 대표는 병무청에 양심수들의 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대책위 공동대표인 진관스님(불교인권위)의 성명서 낭독으로 본 집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집회 이후 진관스님, 김정훈 양군모 대표등 대표단 5인은 병무청장 면담을 통해 성명서와 올바른 해결이 있을 때 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성명서

이제 정부는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온 국민의 바램과 기대속에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이미 1년이 되었습니다. 문민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과거청산과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사회제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개혁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급기야는 국제화 바람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 선지 1년이 되었지만 수많은 양심수들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며, 그들간 사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개혁의 햇살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청원을 한 지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이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아직도 청산되어야 할 수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개혁의 조류가 유실되거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문제는 지난 5·6공화국의 유산이며, 과거청산의 일대용입니다. 이는 1350여명의 고수서명과 총장단의 건의, 168명의 국회의원서명, 2000여 성직자의 서명을 통해서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5월 병무청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드높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원취지를 완전히 수용하여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년학생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는 국회권고에서 인용한 청원취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시기 민주화 활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수배-구속등으로 달미암아 학업 및 사회진출의 기회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또 뒤늦은 병역의무로 인해 정상적 사회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방위 복무 운운하는 것은 조속한 사회

복귀라는 청원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우리는 정부의 문제 해결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권고안에 나타난 바와 같이 88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청년학생 양심수의 전원에 대해 일괄적인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해 병무청의 해결 약속을 믿고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기다려온 이상, 국방부와 병무청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서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부와 병무청에 청원취지를 완전히 수용하여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병무청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청원취지와는 거리가 먼 방안으로 문제해결을 실질적으로 거부할 때, 우리는 국회권고안에 따른 청원취지를 완전히贯彻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4. 1. 28.

청년학생 양심수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인권 자료실		
등록일	류류기호	자료
	B1P	63

10.8 답변에 대한 우리의 입장

10월 8일 병무청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들(정대철의원, 권노갑의원)의 질의에 대해 병무청장은 「당초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병역처리를 위해 현행시행령을 88년도의 것(당시 여야인권회담의 결과 개정된 것)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 6일 국방부에 올렸으나 여러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부결되었고 따라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징집면제는 합산하여 수형량이 2년이 넘는 자에 대해서만 구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각 언론은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이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모임”을 결성하여 지난 7개월동안 주장해왔던 「부당징집 철폐」의 요구가 대폭적으로 수용된 듯한 논조로 보도하였다.

병무청장의 「수형기간이 합산하여 2년이상인 시국사범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상당수의 시국관련 청년학생수형자들이 구제되는 것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 구제구제대상자는 530여 대상자중 13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이는 겉으로는 상당히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이는 개혁을 스스로 거스리는 국방부의 보수적 시각의 일면을 들어내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애초에 행정적 이유에도 법령개정 주장한 것이 아니다. 과거 청산의 차원에서 인도적 견지에서 제기했었다

과거 5.6공 군사통치시대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젊은이들은 수많은 희생과 탄압을 받아왔다. 과거 정권은 그들의 정치적 반대세력이었던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국관련으로 억울한 징역살이를 했던 학생들을 출소 직후 징집함으로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자」 병역법 시행령 중 「징집대상자중 수형자처리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차례 개악하여 악용해 왔다. 현행 시행령이 공안 합수부가 탄생하는 그날 공교롭게 개악되었다는 것에서도 시행령개정의 정치적 의도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군사통치의 민주화운동탄압의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했던 병역법 시행령 및 수형자 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악 이전으로) 과거의 유산을 청산을 요구했었다.

20대의 꽃같은 젊은이들이 비정상적인 시대상황으로 인해 징역살이를 하고 또다시 군대를 가게 되면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여를 사회로 부터 격리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인도적인 견지에서 구제를 요구했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사회 각층에서 관심을 보여주었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도 동의하고 병무행정의 책임부서인 병무청은 물론 기타 정부부처 일부에서 (청와대, 정무장관실) 우리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그 결과 우리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시행령 합의 개정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 합의 개정안은 병무청실무자 및 정무장관실관계자 그리고

국회국방위원장실의 동의에 의해 정책적 결단으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병무청실무자 및 정무장관실의 관계자는 이 합의안이 단순한 행정적인 이유로 좌초되거나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한바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단순한 행정논리로 다른 구제방침의 표명없이 합의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가. 이 합의개정안은 88년 「구제의 선례」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반대이유는 이렇다. 10월 8일 병무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병무청은 당초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병역처리에 대해 여러가지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현행시행령을 개정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을 들어 구제가 불가하다」 는 것이다. 시국관련 수형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 하지만 법제도상의 문제로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무행정의 책임기관인 병무청이 공감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의하고 정무장관실이 지지하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공감을 표하는 요구가 그것도 군사통치의 유산을 청산 하자는 문민정부의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고, 특히나 나라의 미래인 젊은이들의 앞날과 관련된 문제를 단순한 행정적 이유로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군사독재시절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진정한 화합으로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개혁」이라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속에서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이유로 내세우며 개혁에 반기를 들어서 되겠는가.

국방부는 하루속히 최근 발표한 「제2의 창군 선언」의 정신에 맞게 진정한 과거청산을 통한 화합의 시대의 요청에 발맞추어 시국관련 수형자의 병역처리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방부는 아직도 보수적 시각을 못버리고 있는가” 독자특집

10월 8일, 병무청 국감에서 병무청장은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6공하 시국사법들 중 합산하여 2년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병역면제키로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각 언론은 시국관련 수형자들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지난 7개월동안 주장해 왔던 “부당징집 철폐”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듯한 논조로 이를 보도했다. 나는 ‘양군모’의 대표로서 병무청장의 답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진실과 함께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분노를 알리고자 한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과거청산의 요구가 국민적으로 높았던 올초 시국관련 수형자들은 6공화국의 유산인 억울한 징역생활과 출소직후 징집영장이 발부되는 부당징집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국민화합의 하나의 전제가 되리라 믿고 부당한 징집법령의 개정을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 및 여야의원들에게 제기한 바 있다. 약 5백여명의 시국관련 수형자들은 부당한 수형에 의해 학업이 늦어졌으며 졸업을 하더라도 전과때문에 취업이 힘든 처지였다. 게다가 출소직후 징집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이들 20대의 젊음을 본의 아니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약 6개월 동안 본 ‘모임’이 곳곳에 문제제기 한 결과 국회국방위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병역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바있고, 이에따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그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는 병무행정도 과거청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속속의 지적을 병무청이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건의된 사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 건의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다. 10월 8일 국감에서 한 병무청장의 발언은 바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병무청에서 구제하기로 한 2년 이상의 수형자는 13명에 불과하다. 5백여명의 대상자중 13명을 구제해 놓고 마치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듯이 발표하는 것도 가관이지만 법령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국방부측의 반대의 이유는 이렇다. “먼저 입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힘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군면제를 위한 고의적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년의 시간을 벌기위해 평생고생이라는 전과를 감수할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시국관련 수형자에게 정상적 사회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반대할 군인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5백여명의 시국관련 수형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과거청산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교묘한 행정논리로 회피하는 국방부 측의 태도이다. 우리는 애초에 행정적 이유로 법령을 바꾸자고 했던 것이 아니다. 새정부의 과거청산의 취지를 살려 군사통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했던 것이다. 국회도, 언론도 심지어 병무행정의 책임기관인 병무청까지도 이에 동의했는데 국방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인가. 온 국민이 국방부의 다양한 개혁조치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도 국방부의 보수적 사고는 완전히 씻겨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가 하루빨리 그 보수적 사고를 고치고 과거청산의 길에 합류하기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병역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올해내에 과거청산을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국관련 수형자의 병역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탄원서

---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의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위해
과거정산의 차원에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들의 구제를 위한 국방부 및 병무
청의 보다 전향적인 추가조치를 탄원합니다. ---

시국관련 청년학생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었습니다. 5공시절 학생들에 대한 군녹화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 또한 6공 보안사의 윤석양 이병의 기무사의 사찰사건에서도 그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5,6공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조치를 3차례 취한 전례가 있는 줄 압니다.

1989년 3월 병역법 시행령의 개악으로 (공안합수부가 발족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530여명이나 이 시행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의 기회가 박탈될 것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8일 국회 국방위에 병무청장이 출석하여 “이들의 병역처리문제는 국방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최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은 “합산하여 2년 이상 수형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에 대해 구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체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의 9% 이내의 숫자이고 전향적 검토의 결과로서는 너무나 미흡하고 실지로 구제를 포기한 것에 (정부는 30%) 다른 아닙니다.

군은 국군의 날을 즈음하여 제2 창군선언을 선언하였다. 과거 군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빚었던 불행했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과거 불행했던 시절에 발생한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해줄 것을 탄원합니다.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 철회문제 현황

1. 경과

- ▷▷ 89.3.25 국무회의에서 공안합수부 설치 결정과 함께 병역법 시행령(소집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지 채 8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악되었으며
- ▷▷ 그 결과 6공 공안통치에 항거하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징역을 살고 나온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를 출소 후 바로 징집하게 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가 박탈될 처지에 있는 자가 현재 530여명에 달하고 있다.
- ▷▷ 강제징집, 부당징집의 문제는 80년, 84년, 88년 등 5,6공 치하에서도 세차례에 걸쳐 정부의 결단에 의해 해결된 바 있다.
- ▷▷ 이에 1993년 3월, 530여명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청와대, 병무청, 국회 등의 관계자들과 접촉·본격 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계례, 월간중앙, 말지, 뉴스메이커 등 각종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 ▷▷ 하여, 6월 8일 국회 국방위에 병무청장이 출석하여 “이들의 병역처리 문제는 국방부, 육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관계당국의 의견표명 및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7월 8일 임시국회 국방위에서 야당의원(정대철 의원)의 질의로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 ▷▷ 그후 병역법 시행령을 88년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골자의 「합의개정안」(국방부외, 국회, 청와대, 정무장관실)이 마련되었음.
- ▷▷ 7월 6일, 병무청은 「합의개정안」을 국방부에 올렸으나, 국방부 실무진의 반대로 「합의개정안」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 ▷▷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병무청 장모국장은 시행령 개정이 확실하고 병무청장의 해결의지 또한 분명하니 기다려라는 언질 등을 한 바 있다.
- ▷▷ 이에 국방위에서의 주무관청인 병무청이 한 답변과 병무청, 국회, 정무장관실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기대로 530여명의 대상자들은 그동안 일곱달 가까이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개혁의 결과만을 기다리며 생활해 왔다.
- ▷▷ 9월 하순경 병무청에서는 국방부 실무자의 반대라는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힘.
- ▷▷ 그러나 결론의 지연, 혹은 부정적 귀결가능성의 시사로 인해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되어왔다. 예를 들면 동국대 85학번의 한 대상자는 결혼을 하여 부인이 임신 6개월째인 상태에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

다.

나이가 많은 대상자들의 경우 이번에 취업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취업 제한 연령에 걸려 취업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처지에 놓여 있다.

2. 합의개정안의 마련 및 변화 과정

1. 합의개정안의 작성과정

-- 양군모의 요구안 - '시국관련자에 한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소집면제하되 89년 3월 25일부터 93년 2월 24일까지의 경우로 시한규정을 둘 수 있다'

-- 6월 초부터 병무청은 「양군모의 안」과 「병무청 차원의 특단조치」, 그리고 「88년 당시로의 환원(죄질 및 시한규정과 관련 없이 일괄해결)」 등 세 가지의 안을 검토하였음.

-- 이후 1개월 가량의 검토과정을 거쳐 병무청 및 국회 국방위원장,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이 합의한 것은 죄질에 상관없는 「88년 당시로의 환원」안이었으며 이는 「정병우선 원칙」에 따른 것이었음.

합의개정안은 「양군모의 요구안」이 갖는 과거청산의 취지를 살리되 「정병우선 징집의 원칙」을 적용해 미래지향적 시행령을 만들고자하는 의도였음.

2. 시행령 개정 합의안의 작성근거

-- 교육부의 정원령 개정 사례 -- 제적생의 복적을 위해 1987. 7. 11부터 1993. 2. 24 사이에 학생활동에 관련하여 제적된 자에 관한 예외적 복학허용 결정.

-- 88년의 징역 1년 이상 선고자 소집면제 선례. 80년 이전 징역 6개월 이상 선고자에 대한 소집면제 선례 등을 참조.

--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 군의 지휘부담, 군사고 우려 등 「정병우선 징집의 원칙」을 통해 한국군을 정예화시킬 목적.

-- 한편 국방부 실무자들이 시국관련 수형자만의 구제에 대해 국방부는 교육부와 다르다며 반대의사를 편 것도 원인이 되었다.

3. 합의개정안의 내용 및 확인 경로

-- 「징역 2년 이상 선고자의 소집면제」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103조 규정을
-- 「징역 1년 이상 선고자의 소집면제」로 개정

○ 7, 8월 병무청 실무자들과의 면담 과정

○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검토된 바 있었음을 확인.

4. 국방부 실무자의 반대의견

1) 시국관련자에 한해 환원소급적용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지난 6·25시기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시국관련 수형자와 일반 수형자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
- 89년 이후 '1년 이상 2년 미만 선고자'가 약 8천여명 가량인데 500여명의 시국관련자만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반대한다.
- 교육부가 10만여명의 일반제적생 중 600여명의 학생활동 제적생들을 구제한 데 대해 국방부가 교육부와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 표명

2) 정병우선 징집의 원칙을 내세우는 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선고받은 자가 해마다 약 7600여명씩 평균적으로 생겨나는데 수형자들이 군의 지휘부담, 군사고의 우려를 야기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 그리고 20대 중·후반의 시국관련 청년학생의 경우, 특히 장교들에게 지휘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병역법이 개정되면 사회봉사인력으로 약 2만여명이 필요한데 2년 미만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로 흡수할 예정이다.
- 그리고 당분간은 7600여명이 없어도 병역자원의 수급에 문제는 없으나 4-5년 뒤에는 독자가정 중대로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7600여명이 다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결국 530여명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서적 반감을 가지고 있음)

5. 국방부 실무자의 반대의견의 문제점

- 지난 군사통치 시기에 생겨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를 과거청산과 개혁의 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부의 해결방안」이나 「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이유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의견임. 예를 들면 사회봉사제도의 하나인 '방범대원'을 1년 이상 선고받은 수형자가 맡아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리고 정치권이나 타부서의 관심과 의견에 밀려있는 상태에서는 국방부 실무자들은 시행령 개정 대신 법령의 분명한 위임 근거도 없이 병무청장의 특별조치라는 방안으로 처리하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함.
- 결국 국방부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구제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치 않는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다.

3. 우리의 주장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에 대한 부당집집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

압의 일환이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문민정부가 과거청산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행정적 논리로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태도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여야 의원과 청와대 유관 비서실, 정무장관실, 병무청 등에서는 개혁의 전제로서 구시대적 잔재를 청산하고 지난 시기 짚음을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정상적인 신한국 건설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실무자들이 정원령 개정을 통해 시국관련 제적생을 구제한 교육부와 국방부가 같을 수 없다는 태도로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을 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현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는 관계당국자의 언질을 신뢰하며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간 기다려 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5월 29일 김광석 병무청장의 '취직을 대비하여 시험 공부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던 졸업생도 있었고, 올해 취업하지 못하면 취업연령 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이들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과거청산 없이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군사정권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온 젊은이들이 정치수배를 받아 이 사회의 음지에서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강요받기도 하고, 혹은 장역살이를 하고 일부는 출소후에도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징집당하였습니다.

최근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정치수배자에 대한 구제방침을 정부는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수배 뿐만 아니라 아직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에 대한 추가사면·복권 및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 구제 등 여러 과거청산, 정치소외계층 포용을 위하여 「대사면, 대화합, 대전진」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정부가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도 어느 일간지 (9월 24일 (금) 중앙일보) 사설에 실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방부는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였던 젊은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

26

인권 자료실		
등록일	류	자료번호
	BIP	12

수신 : 인권운동사랑방

발신 : 양군모

제 목 : 1월 24일 기독교계 기자회견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기독교계 기자회견
1월 24일 ~ 26일)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대회위>

1월 24일 오전 11시 세월네스토랑에서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기독교 성직자 1517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4일 1400명 규모로 강소가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1517분의 기독성직자들의 의사를 충실히 전달하는 행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김재연(KNCC인권위원회) 부임과 이근복(한국 경의족 회장), 김기현(한국 협의회 총무) 목사님 외에 2부의 성직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지와 경과보고, 성명서 낭독, 질의와 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담당자가 갖고 있어서 오는 발표된 기자회견문과 자료를 보내드림.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보고

지난 1993년은 우리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의로 바탕으로 문민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간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많은 개혁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방화 국제화라는 미명아래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할 사회개혁의 속도가 떨어지고 1994년 들어서는 청산 되어야 할 과거 잔재들을 유지시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 국민들의 마음은 두렵기만 합니다.

개혁의 계속적인 추진은 개방화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되는 것

입니다.

이에 우리 기독교 성직자 1517명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계속적인 개혁을 실시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 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1993년 3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민정부가 탄생되게 된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의 댓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과거 5·6공화국 담을했던 군사통치에 맞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다 수배-구속-수형 생활 등으로 인하여 4~5년간 사회와 격리되었다가 또 다시 군 입대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500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3년 2월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서를 국회 제출하였고 이안이 지난 1993년 12월 17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이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국방부와 정부측에 권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독 성직자들은 국민의 뜻이 확인된 이상 이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그리스도의 뜻이라 믿고 지난 1월 10일부터 서명작업을 시작하여 현재 각 교단과 단체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존경받는 1517명의 기독성직자들께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1517명의 뜻과 의지를 모아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고 정부와 국방부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밝히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